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386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지와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재정적 지원과 안전 관광환경 조성을 계획중인 바,
- 나. 이와 관련하여 서울ONE+패스Ⅱ 출시와 참여 시설 대상 방역 조치 지원을 통하여 침체된 관광업계 활성화의 계기로 마련하고자 함
- 다. 실질적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및 관련 시설 안전운영 지원 등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,
- 라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관광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1) 사 무 명 : 서울관광재단 출연금
- 2)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3) 필 요 성
 - 관광지 및 체험관광시설 사각지대 지원 및 시민 대상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계기 마련 필요

4) 사무내용

- 2021 서울ONE+패스Ⅱ 제휴 관광시설 할인 및 방역 지원

나. 서울관광재단 기관 개요

- 1)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-2 삼일빌딩
- 2) 규모 : 전용 6,941㎡ (지상 1층(일부), 4~11층 임대)

다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1) '21년 출연금 추정 소요예산(안) : 400백만원
- 2) 산출근거
 - 제휴시설 할인지원 : 320백만원
 - 시설 안전운영 지원 : 80백만원
 - ▶ 방역물품 지원 : 55백만원
 - ▶ 시설 방역 점검 : 25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조치사항 :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관광정책과 관광협력팀 김현정(☎2133-2819)